

부록 2-가-1

대한민국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대한민국이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대한민국이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대한민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K”라 한다)의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유럽연합의 원산지 상품은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규정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HSK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수량의 유럽연합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대한민국 영역으로 수입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곳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에 규정된 특정 관세율할당에 대한 공매제도

2. 대한민국은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고 이행하기 위해 공매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양 당사자가 상품무역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상호 합의에 의해 설정한다. 다만, 가호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¹⁾

- 가. 1) 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3년 연속기간 중 2년 동안 95퍼센트 미만이 사용된 경우, 유럽연합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불완전한 사용의 원인을 확인하고 다루기 위하여 공매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협의한다. 협의에서 양 당사자는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 2) 양 당사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 3) 대한민국은 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도달한 상품무역 위원회에서의

1) 공매제도의 조건은 미사용된 허가의 시의적절한 반납과 재배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수입이행보증금의 물수를 포함하여 미사용된 허가를 사용 또는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칙을 포함한다.

결정을 그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까지 이행한다. 그리고

- 4) 대한민국은 다음 중 한 가지가 발생하는 경우 유럽연합의 원산지 상품이 관련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가) 대한민국이 가호3)목에 따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가호1)목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 요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까지 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 항의 적용 또는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그 협의는 당사자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

이) 협정에 규정된 특정 관세율할당에 대한 허가제도

3. 대한민국은 제7항, 제9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및 제15항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가호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양 당사자는 관세율할당 물량을 받을 자격을 포함하여 허가제도의 정책 및 절차와 이에 대한 어떠한 변경 또는 개정에 대하여도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합의한다.

- 가. 1)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3년 연속기간 중 2년 동안 95퍼센트 미만이 사용된 경우, 유럽연합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쿼터 내 물량의 불완전한 사용의 원인을 확인하고 다루기 위하여 배분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협의한다. 협의에서 양 당사자는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 2) 양 당사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 3) 대한민국은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

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도달한 상품무역 위원회에서의 결정을 그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까지 이행한다. 그리고

- 4) 대한민국은 다음 중 한 가지가 발생하는 경우 유럽연합의 원산지 상품이 관련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가) 대한민국이 가호3)목에 따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가호1)목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요청일 후 9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까지 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 항의 적용 또는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그 협의는 당사자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

국영무역기업

4. 대한민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와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만 자신의 영역에서 국영무역기업에 의하여 유럽연합의 원산지 상품이 수입, 구매 또는 유통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넙치류

5.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후에 기술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800
2	800
3	864
4	933
5	1,008
6	1,088
7	1,175
8	1,269
9	1,371
10	1,481
11	1,599
12	1,727
13	무제한

물량은 선착순 방식에 따라 들어온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거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2-A”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303.39.0000.

분상의 밀크 또는 크림(지방 1.5퍼센트 미만)과 버터밀크,
분상의 밀크와 크림(가당 및 무가당, 지방 1.5퍼센트 초과)(전지분유),
밀크와 크림(연유)(가당 또는 무가당 및/또는 농축하지 아니한 것)

6.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1,000
2	1,000
3	1,030
4	1,060
5	1,092
6	1,125
7	1,159
8	1,194
9	1,229
10	1,266
11	1,304
12	1,343
13	1,384
14	1,425
15	1,468
16	1,512

이행 16년차 후,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6년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 공매(12월, 3월, 6월 및 9월)를 통해 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
속서 2-가 제1항미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
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그리고 0403.90.1000.

식용 유장

7.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흐에 기술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3,350
2	3,350
3	3,450
4	3,554
5	3,660
6	3,770
7	3,883
8	4,000
9	4,120
10	4,243
11	무제한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큐터 내 물량을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하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0-B”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4.10.1010, 0404.10.1090, 0404.10.2110, 0404.10.2120, 0404.10.2130, 0404.10.2190 그리고 0404.10.2900.

버터 및 우유 추출 유지방

8.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흐에 기술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350
2	350
3	360
4	371
5	382
6	393
7	405
8	417
9	430
10	443
11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고 큐터 내 물량을 공매를 통해 배분하며, 원산지 상품의 전체 큐터 내 물량은 매 연도 첫째 월에 실시되는 그 연도의 첫 번째 공매 동안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첫 번째 공매에서 배분되지 아니하는 모든 물량은 셋째 월 15일 이전의 후속 공매에서, 그리고 직전 공매일부터 45 일 이내의 추가 후속 공매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0”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5.10.0000 그리고 0405.90.0000.

치즈(신선, 갈았거나 분상한 것, 가공한 것, 그리고 기타 모든 종류)

9.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후에 규정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4,560
2	4,560
3	4,696
4	4,837
5	4,982
6	5,132
7	5,286
8	5,444
9	5,608
10	5,776
11	5,949
12	6,128
13	6,312
14	6,501
15	6,696
16	무제한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큐터 내 물량을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해 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차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5”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6.10.1000, 0406.20.0000, 0406.30.0000 그리고 0406.90.0000(0406.90.0000은 체다치즈를 포함한다). 이행 11년차부터 체다치즈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더 이상 관세율할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천연꿀

10.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후에 기술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50
2	50
3	51
4	53
5	54
6	56
7	57
8	59
9	61
10	63
11	65
12	67
13	69
14	71
15	73
16	75

이행 16년차 후,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6년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 공매(12월, 3월, 6월 및 9월)를 통해 배분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미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9.00.0000.

오렌지

11.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후에 기술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20
2	20
3	20
4	20
5	20
6	20
7	40
8	40
9	40
10	40
11	40
12	60

이행 12년차 후, 큐터 내 물량은 이행 12년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큐터 내 물량을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1년차까지는 연도별 공매를 통해 배분하고, 이행 12년차부터는 가장 최근 3년 기간의 과거 실적에 기초한 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공사는 매년 8월에 공매를 실시하고 수입허가를 배분하며, 수입자들은 무관세 물량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생산자단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대외무역법상 수입업자로 등록된 인 또는 실체는 무관세 물량의 할당을 받도록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과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S-B”에 따라 취급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805.10.0000.

맥아 및 맥주맥

12.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흐에 기술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10,000
2	10,000
3	10,800
4	11,600
5	12,400
6	12,772
7	13,155
8	13,549
9	13,956
10	14,375
11	14,806
12	15,250
13	15,707
14	16,179
15	16,664
16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신청에 대해 선착순으로 매 연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인이 요청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연도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신청자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첫째 월 동안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연도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공사는 그 연도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으로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재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

속서 2-가 제1항차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5”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003.00.1000 그리고 1107.10.0000.

조제분유 및 기타

13.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나호에 기술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450
2	450
3	463
4	477
5	491
6	506
7	521
8	537
9	553
10	570
11	무제한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큐터 내 물량을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해 배분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0”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901.10.1010 그리고 1901.10.1090.

보조사료

14.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후에 기술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5,500
2	5,500
3	5,665
4	5,834
5	6,009
6	6,190
7	6,376
8	6,567
9	6,764
10	6,967
11	7,176
12	7,391
13	무제한

한국단미사료협회 및 한국대용유사료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허가제도를 통해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이 관세율할당은 신청자가 허가서가 발급된 연도 직전 24개월 동안 수입한 다후에 규정된 원산지 상품의 물량과 그 연도에 신청자가 요청한 원산지 상품의 물량에 근거하여 배분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2”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그리고 2309.90.9000.

덱스트린

15.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후에 기술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메트릭톤)
1	28,000
2	28,000
3	30,500
4	33,000
5	35,000
6	36,050
7	37,131
8	38,245
9	39,392
10	40,574
11	41,791
12	43,045
13	무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신청에 대해 선착순으로 매 연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인이 요청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연도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신청자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첫째 월 동안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연도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공사는 그 연도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으로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재배분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2”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그리고 3505.10.5090.